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2. 16 선고 2019가단552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석헌

변론 종결 2021. 1. 12.

판결 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40,000,000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B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에 대하여 원고 A이 2016. 11. 1.자로 대여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2019. 2.15.자 판결금 채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소50716)이 있고, 원고 B은 2017. 9.1.자로 대여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2019. 2. 15.자 판결금 채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8가소50709)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11. 2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7. 11.6.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7년 제2094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 합의서(이하 '이 사건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인: D, 피고

D과 피고는 금번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사항-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증여한다.
2. 위 아파트의 이전과 동시에 F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141,600,000원의 채무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은 피고가 하기로 하며, D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각각 금 30만원(합계금 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6. D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금 삼천만원을 지급한다.

7. 위 재산분할 약정은 배우자 피고에 대한 위자료 금 삼천만원과 양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하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부족분은 차후 D이 본 합의약정에 의한 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1.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과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호협972)을 하여 2018. 2. 26.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2018. 5. 23.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D이 원고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채권액인 40,000,00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으로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인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실제 협의이혼을 한 이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약정인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과연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와 D의 순재산은 약38,000,000원(는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억 8천만 원-근저당권 채무 107,808,000원-피고의 G조합 가계일반자금 대출 17,899,013원-피고의 H조합 일반대출 10,000,000원-피고의 I 신용대출 8,000,000원+피고의 적극재산 2,000,000원 상당)이었던 사실, ② 기록에 나타난 혼인생활 등에 의하면 피고의 기여도가 50% 정도로 보이므로 피고의 재산분할 몫은 약 19,000,000원(=38,000,000원×1/2) 정도일 것인데 피고의 순재산이 -34,000,000원이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D으로부터 금원으로 받을 재산분할액은 계산상 약 53,000,000원 정도(=19,000,000원+34,000,000원)가 되는 사실, ③ 위 재산분할액 대신 피고가 순자산가치가 7천만 원 정도(시가 1억 8천만 원-근저당권 채무 107,808,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실, ④ 비록 피고가 약 1,7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합의서에서 재산분할에 양육비와 위자료 3천만 원을 포함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을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 표시

강원도 원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L동
(도로명주소) 강원도 원주시 M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615.912㎡

2층 615.912㎡

3층 615.912㎡

4층 580.552㎡

5층 580.552㎡

6층 580.552㎡

7층 580.552㎡

8층 580.552㎡

9층 580.552㎡

10층 580.552㎡

11층 580.552㎡

12층 580.552㎡

13층 580.552㎡

14층 580.552㎡

15층 580.552㎡

지1층 615.9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N호

철근콘크리트조 118.74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강원도 원주시 J 대 19702.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9702.6분의 66.8043. 끝.